

# 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 변경 등에 관한 기준」 고시 제정안

## 1. 제정이유

「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2항이 시행(2022.4.8.) 됨에 따라,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에 대해 고시로 달리 운영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주의 이상의 재난 위기경보 발령으로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국가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달리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함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」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없음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- 213호

「의료법」 제80조 및 「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2항에 따라 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하기 위한 교육과정 변경 등에 관한 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·발령합니다.

2022년 9월 14일  
보건복지부장관

**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 변경 등에 관한 기준」**

**제1조(목적)** 이 기준은 「의료법」 제80조, 「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따라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주의 이상의 재난 위기경보 발령으로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간호조무사 교육·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이론교육의 방법)** 법 제8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 중 교육시간의 50% 이내(370시간) 원격수업을 인정한다.

**제3조(실습교육의 방법)**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하는 의료기관(조산원은 제외한다)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 중 교육시간의 30% 범위 이내(234시간)는 교육훈련기관 내에서의 실습교육을 인정한다.

**제4조(자격증 발급)**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전 실습교육을 이수하지 않은

응시자에 한하여 실습교육 이수 후 합격발표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교부한다. 단, 실습교육 이수일은 시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서는 안된다.

제5조(유효기간) 제2조부터 제4의 규정은 2023년 하반기 시험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## 부 칙 <제213호, 2022. 9. 14.>

제1조(발령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